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Ci클래스 신설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0. 1. 22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9.20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9.20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. 기준	<u>2019. 12. 31. 기준</u>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Ci 클래스 신설	-	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Ci) (펀드코드:D1017)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Ci 클래스 신설	-	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Ci) (펀드코드:D1017)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Ci 클래스 신설	-	<u>2020. 01. 22 : Ci 클래스 신설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. 기준	<u>2019. 12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. 기준	<u>2019. 12 31. 기준</u>

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Ci 클래스 신설	-	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Ci)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이면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개인 및 법인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	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의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	6) 집합투자증권 : 법 제 110 조의 규정의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표준편차 : 11.31%</u>	<u>표준편차 : 12.05%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Ci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	-	<u>④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Ci)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이면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개인 및 법인</u>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Ci 클래스 신설	-	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Ci)</u> <u>집합투자업자보수 :0.400%</u> <u>판매회사 보수 :0.230%</u> <u>신탁회사보수 :0.015%</u>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0.015%</u> <u>총 보수 :0.660%</u> <u>기타비용 :0.008%</u> <u>총보수비용 :0.668%</u> <u>합성총보수비용 :0.674%</u> <u>증권거래비용 :0.095%</u>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	---

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
따른 갱신

2019. 9. 20. 기준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9.20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9.20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9.9.20 기준</u>

